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1/10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 6항에 의거 전임교원의 재임용과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본교에 근무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임용대상자에게 적용한다.

② 교원의 직위별 근무한 재임용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조교수 : 최근 7년

부교수 : 최근 6년

제3조(임용기간 계산) ① 임용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자로부터 임용기간을 정한다.

② 학기도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임용 기간 중 교원 휴직사유 발생 시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을 계산한다.

제4조(임용신청 및 절차) ① 임용심사대상교원은 교무처장이 공지하는 바에 따라 임용신청서와 심사대상 기간의 교원업적평가(이하‘업적평가’라 한다) 및 관련 심사자료를 임용예정 2월 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연구업적의 경우는 임용예정일 직전까지의 업적에 관하여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업적 관련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②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의뢰하여 전임교원 승진임용(재임용) 평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서식에 의해서 평가한다.

③ 교무처장은 제2항의 결과를 대상교원에게 통보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적용한다.

④ 기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방법 및 항목) ①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단, 해외연수, 병가나 특별한 업무 사정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해당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심사항목은 교수업적평가, 연구실적, 대학발전부분, 교원품위 항목으로 정하며,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2/10	관리 부서	교무처

③ 대학발전부문의 평가는 전체업적평가 점수의 가산점으로 인정한다.

제6조(연구실적 인정범위)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 국내·외 저명학술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와 대학논문집에 게재된 전공 연구논문
2. 저서 : ISBN으로 출판된 전문학술저서, 일반학술저서(사전 포함), 번역서
3. 연구보고서 : 학술연구조성비에 의거한 연구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된 평가보고서 등
5. 해당 연도 직급기간 중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박사학위는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접수증을 징수하여 확인한다.

제7조(연구실적 심사평가 기준) 연구실적의 심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구논문은 저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저자구분	KCI 전문학술지 (교신, 책임저자)	SCI 급 전문학술지 (교신, 책임저자)	전국규모 혹은 교내논문집 (교신, 책임저자)
1인	100% (100%)	200% (200%)	80% (80%)
2인	70% (90%)	140% (180%)	56% (72%)
3인	50% (70%)	100% (140%)	40% (56%)
4인이상	30% (50%)	60% (100%)	24% (40%)
석사학위 논문	100%		
박사학위 논문	200%		

2. 전공분야 학술서적은 논문저자기준과 같이 인정한다. 단 사전, 편찬서와 개정본은 제6조 1호의 KCI 전문학술지 평가기준의 50%를 적용한다.
3. SCI급 전문학술지(SSCI, A & HCI, SCI(E), SCOPUS, CINAHL, PUBMED)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 전문학술지)의 2배로 인정한다.

제8조(임용제청 절차)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과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의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평정표를 심의한 후 해당임용교원을 법인이사회에 임용을 제청한다.

③ 재임용과 승진임용교원은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재심) ① 재임용과 승진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3/10	관리 부서	교무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업적평가심사위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촉한다.
- ③ 재심위원회의의 재심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임용 및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한다.
- ④ 제 3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

제2장 재임용

제10조(재임용)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 학기초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재임용의 최소요건)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당해직급에서 평가된 점수를 해당년도로 나누어서 70점 이상 평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임용 심사절차) ① 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②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임용 심의시행 절차는 교원인사규정에 준한다.

제14조(재임용 탈락) ① 재임용 탈락대상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소명에 대한자료는 본인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의 요청에 의해 소명에 대한 적부를 심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승진 임용

제15조(승진임용) ① 재직 중인 교원으로 승진자격 기준에 도달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승진임용신청서와 함께 교원업적평가와 연구실적물 등의 관련 심사자료를 제출케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4/10	관리 부서	교무처

제17조(승진의 기간과 요건) ① 승진임용심사대상 교원은 승진소요연수 외에 교원업적평가와 연구실적 등이 다음의 최저평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 위	최소 소요연수	교원업적 평가	연구실적
조교수→부교수	최근 7년	평균 80점	500%
부교수→교수	최근 6년	평균 80점	400%

② 공인된 해외 연구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연수 및 강의기간은 소요연수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원업적평가와 연구실적은 전향에 준한다.

③ 승진 대상자가 승진 심사평가부족이나 승진심사자료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승진 해당시기로부터 매학기 당해직급 년 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심사 및 평가) ① 승진교원대상자는 승진기준일 4월전까지 승진심사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총장이 위촉한 교원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승진평가서류를 평가한다.

③ 교원의 승진, 재임용 심사 시 위원회 위원이라 하더라도 당해 본인은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승진평가 동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승진여부를 동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1. 승진소요연수
2. 교원업적평가 평균 80점
3. 연구실적 평점(정년보장교원임용은 SCI 급 논문 100% 포함)
4. 기타 교육관계법령규정 준수 및 교수품위 유지(정년보장교원임용은 80점 이상 충족)
5. 대학발전 부문 점수(정년보장교원임용은 50%이상 충족)는 3항에 가점됨

제20조(승진임용탈락자 재심사와 조건) ① 승진임용 탈락대상자는 승진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교원에 한한다.

②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교원은 그 시점부터 당해 직위기간동안 재임용되는 것이며 승진할 때까지 호봉승급을 정지한다.

③ 승진임용 재심사 신청은 승진심사 탈락 이후 매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재심사는 당해직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계산하여 승진임용심사 기준평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승진임용 탈락대상자는 당해직위에서 재임용기간동안 재심사에서 연기, 보류, 탈락되어 재임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해임된다.

제21조(재심) ① 승진임용 탈락자는 제9조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5/10	관리 부서	교무처

제22조(정년보장 교원승진) ① 교수로 승진대상자는 정년까지 임용대상자로 정관 40조 2항에 의거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년보장 임용교원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교수는 승진 후 7년이 된 시점에서 200%에 해당되는 연구실적을 심사하며 7년마다 재심사한다. 심사를 위한 실적물 제출은 기간만료 4개월 전 제출통보하여 업적심사하고 기간만료 2개월 전 심사확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기 타

제23조(내규의 개·폐) 이 내규의 개·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제19조 1항의 3호의 시행은 규정 개정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2. (경과조치) 임용일 변경에 따라 규정변경이전의 승진임용된 교원의 임용일을 4월 1일은 3월 1일로, 10월 1일은 9월 1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6/10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7/10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1]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임용 절차

순번	절 차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1	임용신청	전임교원임용시행세칙 제4조가 규정하는 재임용,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교무처	재임, 승진 임용 일 4월 전에 구 비서류 제출
2	재임용, 승진서류평가	업적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표 2에 의한 서류심사 후 개별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교무처장	총장이 위촉한 교 내 교 원 으 로 구성
3	평가처리결과	교무처장은 평가결과의 적/부를 평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교무처장	업적과 실적은 승진임용일까지 인정함
4	총장심의요청	임용교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총장	
5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평가 자료를 심의하고 대학에서의 교원품위 및 제반 활동을 참작하여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교원인사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이상의 동의
6	총장제청	전임교원임용세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임용대상자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평정표를 첨부하여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총장	
7	교원승진임용 동의	학교법인 이사회는 승진임용 교원에 대한 제청을 동의로 의결한다.	법인이사 회	
8	교원임명	이사장은 학교의 승진임용일자로 교원승진을 임용한다.	이사장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8/10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2]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신청서 및 평가표

신청자 성명 :

현 직급 :

현 직급임용일 : 년 월 일

연 번	평 가 내 용	기 준	자 가 평 가	심 의 평 가	평 정 결 과		비 고		
1	교원 업적 평가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총점수/년 평균점수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조,부)교수 년차(학년도)							
2	연구 실적	논문			총 합계	2+3 계 %	100% 까지 인정		
		저서							
		연구보고서							
3	대학 발전 부문	SCI급, KCI급 책임저자, 교신저자			%				
		연구비수혜(1억↑)책임자							
		대학발전 기여도							
4	교원 품위	대학 제 규정 준수	가, 부				교원 인사 위이 평가		

- ① 재임용: 교원업적평가=평균70점, 연구실적=100%이상(2년 미만은 70%이상)
- ② 승진임용: 부교수 교원업적평가=평균 80점 이상, 연구실적은 500% 이상
교수 교원업적평가=평균 80점 이상, 연구실적=400% 이상
- ③ 대학발전부문: 연구실적으로 100%까지 가점 포함됨
대학발전기여도는 50%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교원품위는 교원인사위원이 ‘가’의 평정대상자로 추천한다.

상기 내용으로 부교수 승진 임용교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 : 년 월 일
(서명)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장 : (서명)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9/10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3]

전임교원 임용의 품위정성 평가

대 상 자	소속	
	성명	
	현직급	
	현직급 임용일	
	전공과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실적 및 의견	평정				
			A 10	B 8	C 6	D 4	E 2
1.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2. 연구실적 활동	연구실적의 양						
	연구실적의 질						
3. 교수(강의)능력	교수의 열의						
	수업이행 상태						
4. 산학협동 및 취업 지도	취업지도						
5. 학생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학생지도						
	학생행사참여도 및 충실도						
6. 근무상황	제규정 및 학교방침의 준수성						
7. 학교 발전공헌도 및 사회봉사	대학 명예시장 및 사회봉사 (학술활동, 학회, 교육협의 회, 프로젝트 등)						
합계			점 / 100 점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 시행세칙	문서번호	3-2-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10/10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4]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표

승진임용내용 :

작성일자 : 년 월 일

연번	성명	교원업적 평가	연구실적	대학발전 부문	교원품위	평정 점수	가/부
1							
2							
3							
4							
5							
6							
7	종합평가						

상기내용을 의결하여 임명동의를 제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 (인)

교원인사위원장 : (인)

학교법인 의담학회 이사장 귀하